

# 오산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

제정 2024년 12월 20일 조례 제223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오산시의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이버공격·위협”이란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서비스거부(DDoS: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),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·교란·마비·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·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.
2. “사이버보안 업무”란 사이버공격·위협에 대하여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.

**제3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**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은 「오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지도·감독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시장은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)**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.

1.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
2.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
3.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
4.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
5. 사이버보안 교육
6. 사이버공격·위협 대응 훈련

오산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

7. 사이버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 및 점검
8.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
9. 보안관제
10. 사고 대응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오산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
12.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